천년의 빛 영광 Glory Yeonggwang

위대한 Great 영광, 군민과 함께

영광군

옥당골소식

제567호

2023. 2. 25.(토)

♡군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지♡

목 차

Ⅰ. 군정 소식

1. 노인 눈·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 3

2. 2023년 경로당전담 “신속수리반” 운영 알림 ····· 4

3.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6

4.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 7

5. 2023년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8

6. 영광작은영화관 개관 2주년 기념 시사회 안내 ····· 9

7. 가뭄대비 물 절약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 11

8. 2023년도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 안내 ····· 12

9.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 13

10. 2022년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14

11. 보훈 · 참전명예수당 안내 ····· 16

목 차

II. 기타 소식

1. 2023년 봄철 산불예방 안전수칙 ····· 17

2. 산악 · 해안 조난신고는 국가지점번호를 이용하세요! ···· 18

3. 임야화재 인명피해 예방 안내 ····· 19

4.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유의사항 안내 ····· 20

5. 고향사랑 기부제 ····· 21

6. 농지은행 사업 안내 및 상담 ····· 22

7. 2023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 26

8. 적십자 회비 모금기간 연장 안내 ····· 32

노인 눈·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지원내용

구분	눈 수술비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내용	백내장, 녹내장, 눈물샘, 망막질환 등 안과적 수술	무릎인공관절 검사비, 진료 및 수술 (한쪽 무릎 120만원, 양쪽 무릎 최대 240만원까지)
신청방법	- 구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수급자증명서 - 접 수 처: 보건소 방문보건팀 ※ 수술 전 신청 원칙 (수술 후 신청 불가)	
지원재단	한국실명예방재단	노인의료나눔재단

□ 사업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350-4684)

2023년 경로당전담 "신속수리반" 운영 알림

자체 수리 능력 및 인력이 부족한 관내 등록경로당을 대상으로 즉시 처리 가능한 **소규모 생활불편 사항을 담당공무원(가정행복과 어르신시설팀)이 직접 찾아가 민원 해결하여 적극행정 실현**

□ 경로당전담 "신속수리반" 운영

○ 사업내용: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생활 불편 사항을 담당공무원(가정행복과 어르신시설팀)이 직접 찾아가 신속 수리

○ 사업대상: 관내 등록 경로당 (영광읍 산수정경로당 등 378개소)

○ 신속수리반 구성: 가정행복과 어르신시설팀 (총 4명)

○ 지원기준: 재료비 50만원 내외 소규모 수리

○ **지원범위: 즉시 처리 가능한 생활불편 사항**

연 번	분 야	주요 지원 내용	비 고
1	전기분야	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전등, 전등기구 등 소규모 전기관련 부속품 교체	생활용품 신규설치, 광범위 한 개보수, 가전제품 수리 등 제외
2	위생분야	싱크대, 세면대 등 배관부속품 교체 수도꼭지, 샤워기, 고무패킹 교체 등	
3	기타분야	못 박기, 문고리, 문짝 부속품 교체, 방충망 등 보수	

○ 신청방법: 전화문의 후 신청서 제출 (군 담당자 ☎ 061-350-5682 및 관할 읍 · 면사무소) ※ 상시접수

□ 2022년 경로당전담 "신속수리반" 운영 실적

○ 관내 등록경로당 149개소 / 콘센트 소화패치 부착 등 400여개 민원 해결

☐ 경로당전담 “신속수리반” 운영 안내문

경로당전담 신속수리반 운영

◎ 경로당전담 “신속수리반” 이란?

자체 수리 능력 및 인력이 부족한 관내 등록경로당을 대상으로 형광등, 방충망 교체 등 즉시 처리 가능한 **“소규모 생활불편 사항”을 군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신속 수리하는 민원 해결반**

◎ 신청방법

① 경로당 시설 경미한 파손 발견 → ② 가정행복과 및 읍면사무소 문의 → ③ 읍면사무소 신청서 작성

④ 경로당 전담 신속수리반 출동 → ⑤ 쾌적한 경로당 이용

◎ 지원분야

전기분야	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보수 전등, 전등기구 등 소규모 전기관련 부속품 교체	생활용품 신규설치, 광범위 한 개보수, 가전제품 수리 등 제외
위생분야	싱크대, 세면대 등 배관부속품 교체 수도꼭지, 샤워기, 고무패킹 교체 등	
기타분야	못 박기, 문고리, 문짝 부속품 교체, 방충망 등 보수	

접수(문의)처 : 영광군청 가정행복과(☏061-350-5682) 및 관할 읍 면사무소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3. 2. 13.(월)~3. 31(금)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관내 슬레이트 주택(건축물 용도상 주택)/비주택(창고, 축사) 소유자
- 지원내용: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용
- 지원기준
  - ☞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 1동당 최대 352만원
  - ☞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1동당 최대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 ☞ 취약계층(수급자 등) 지붕개량비 지원: 1동당 최대 1천만원

□ **사 업 량 : 255동[주택 슬레이트처리 210, 취약계층 지붕개량 5, 비주택 슬레이트처리 40]**

□ **접 수 처: 해당 읍·면 사무소/군청(환경과)**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

- 우편 접수 시 발송날짜 순서대로 접수하여 순위 결정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서식) 1부.
- 건축물대장 및 위치도(사진첨부) 각 1부.

※ 신청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로부터 철거 동의서 작성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 1순위 : 기초수급생활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 2순위 : 연계사업 대상자(빈집정비, 주거급여사업 등)

□ **대상사업자 확정: 접수마감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취약계층 및 빈집정비 등 연계사업 우선으로 신청일자 기준

문의사항: 영광군청 환경과 (☎ 061-350-5332)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수립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

☐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

☐ **주관기관** :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 **조사기간** : 2023. 2. 9.~3. 6.(기간 중 25일)

☐ **조사대상** : **7,442업체**(일반 6,641 / 1인 자영 801)

○ 조사기준일('22.12.31.) 현재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 **조사항목**

○ 전국 공통: 10항목

(1) 사업장 운영장소 (2) 사업체명 (3) 사업장 대표자
(4) 소재지 (5) 창설년월 (6) 사업자 등록번호
(7) 조직형태 (8) 사업의 종류 (9) 종사자 수
(10) 연간 매출액

☐ **조사방법**

○ 현장 면접조사 원칙, 전화조사·인터넷조사·배포조사도 가능

☐ **문의사항:** 통계청 경제총조사과(☎080-457-2023), 영광군청 기획예산실 (☎ 061-350-5307)

2023년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각종 사고 또는 재난피해 군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생활안정 회복 지원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가입현황

○ 가입기간: 2023. 2. 1.~2024. 1. 31.(1년간)

○ 계 약 자: 영광군청

○ 보 험 사: DB손해보험(주)

○ 피보험자: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거주군민(외국인 포함)

※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보험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본)

※ 문의 ┌ DB손해보험 ☎ 1522-3556, FAX 0507-774-0662

└ 영광군 안전관리과 ☎ 061-350-5179

□ 보험혜택

구 분	담 보	보상금액	비 고
65세 이상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15세~80세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300만원	
15세 이상 15세미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포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제외)	2,000만원(사망) 2,000만원(후유장애 : 장애비율에 따라)	15세 미만 사망담보 제외
	▸익사사고 사망 ▸침몰 또는 전복사고 사망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 책임	1인당 500만원 한도 (자기부담 2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최초 1회한)	
	▸화상수술비	100만원(수술 1회당)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2,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영광작은영화관 개관 2주년 기념 시사회 안내

영광작은영화관 개관 2주년 기념 군민 초청 영화시사회

개관일: 2021년 3월 4일

○ 대　　상: 영광군민

○ 상영기간: 2023. 3. 3.(금)~3. 5.(일) 3일간

○ 상영영화(예정): 바다탐험대 옥토넛, 살수, 대외비, 멍뭉이, 카운트

○ 예매안내

- 시사회 당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현장 무료 예매(영화당 1인 2매)
- 시사회 당일 상영 영화만 예매 가능
- 영광군에 거주하는 영광군민만 관람 가능(타지역민 관람 불가)
- 시사회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상영시간표는 영광작은영화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http://yeonggwang.scinema.kr)

○ 문　　의: 영광작은영화관(☎351-5501)

□ 영광작은영화관 개관 2주년 기념 군민 초청 영화시사회 포스터

가뭄대비 물 절약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가뭄 장기화에 따른 관내 주요 수원지 저수율 심각단계
군민의 물 절약 운동 자발적 참여 유도로 가뭄 장기화 대비

□ 감면개요

○ 감면기간: 2023. 2월～6월 부과 분(가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대　　상: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 10%이상 절감 가구

○ 요금감면: 상수도 사용량 부과 요금의 10% 20% 단계별 감면

- 상수도 사용량 10% 20%미만: 10% 감면
- 상수도 사용량 20%이상: 20% 감면

○ 감면제외

- 낙월면, 전년 동월 사용량이 “0”, 옥내누수, 급수중지·정지 가구 등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 가구는 일괄 적용하여 부과 고지

□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방법

○ 세면대와 싱크대 하부 수도밸브 조절하기(20~40% 절약 가능)

○ 양변기 수조에 1.8L 물병 1～2개 넣어두기(20% 절약 가능)

○ 샤워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기(50% 절약 가능)

○ 양치할 때 컵 사용하기(70% 절약 가능)

○ 빨랫감 모아서 한 번에 세탁하기(30% 절약 가능)

○ 설거지통을 이용하여 설거지하기(60% 절약 가능)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061-350-5903)

2023년도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 안내

○ (목　　적) 농업 현장의 영농애로사항 해결 및 실용화 기술 확대 보급과 읍면별 농업인 편익도모 및 농업인상담기능 활성화

○ (기　　간) 2023. 1. 2. ~ 2023. 12. 31.

구　분	임시 근무	상시 근무	임시 근무
기　간	1.2. ~ 1.31.	2.1. ~ 10.31.	11.1. ~ 12.31.
근무자	직원, 오전근무	상담역	직원, 오전근무

○ (개 소 수) 10개소

연번	상담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비고
		주 소	행정전화	
1	영광읍상담소	영광읍 옥당로 179	350-5810	상담소장
2	백수읍상담소	백수읍 백수로 994	350-5662	상담역
3	홍농읍상담소	홍농읍 동부로 13	350-5613	상담역
4	대마면상담소	대마면 동삼로 705	350-5614	상담역
5	묘량면상담소	묘량면 묘량로 283	350-5615	상담역
6	불갑면상담소	불갑면 함영로 2852	350-5616	상담역
7	군서면상담소	군서면 군서로 75	350-5617	상담역
8	군남면상담소	군남면 군불로 86	350-5618	상담역
9	염산면상담소	염산면 천년로1길 1-3	350-5619	상담소장
10	법성면상담소	법성면 진굴비길 23	350-5620	상담역

○ (주요업무)

- 영농기술 상담, 영농현장 기술 지도 및 신기술 보급
- 정부보급종(벼, 맥류, 감자, 콩 등) 및 고추, 배추, 양파 육묘 보급
- 여름철 영농 교육 강의 등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등

♣ 문의: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350-5573)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란?

○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를 지급하여 월 최대 9.5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해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유·청소년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구의 만 5~18세 유·청소년(출생연도 2005~2018년생)

○ 지원기간: 2023년 1월~12월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9.5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사 업 비: 131,100천원(기금 91,770, 도비 11,799, 군비 27,531)

○ 대상시설: 9개소

- 영광읍(7): 세계특공무술연맹극한체육관, 스마일요가, 영광검도관, 영광전남합기도체육관, 영광체육관(태권도), 영광헬스클럽, 채승곤 KO복싱 클럽
- 홍농읍(1): 용인대광명태권도
- 법성면(1): 서해태권도체육관

□ 지원절차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개인 이용권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스포츠산업과 및 각 읍·면사무소)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접속	⇨	개인 이용권 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	전용카드발급 및 강좌 신청
svoucher.kspo.or.kr		수급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입력		군청 스포츠산업과		신한체크카드

2022년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하여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독려

□ 자진신고기간: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1년)

□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방법

○ 신고기관: 영광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지하수 담당

○ 신고서류: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시공업체 대행 가능)

구 분	제 출 서 식	구 비 서 류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자진신고자 혜택

○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및 제38조(제37조제1호 관련),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 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구 분	위 반 내 용	벌칙 · 과태료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호)

□ 문의사항

○ 영광군 건설과 건설행정팀 문의(☎061-350-5486)

보훈 · 참전명예수당 안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군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

□ 신청권자: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유족)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자	비 고
영광군 보훈 명예수당 (매월 7만원)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해당하는 자	만 65세 이상
영광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매월 8만원)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영광군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매월 5만원)		
전라남도 보훈 명예수당 (매월 2만원)	*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매월 3만원)	*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유족 중 배우자,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6.25전쟁,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및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된 자

□ 문의사항: 영광군청 사회복지과(☎350-5813) 및 각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2023년 봄철 산불예방 안전수칙

산에 갈 때 주의사항

○ 성냥,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맙시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 야영 · 흡연**을 하지 맙시다.

논 · 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 논 · 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고**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매우 불리합니다.

○ 논 · 밭두렁, 영농부산물 태우기는 **봄철 미세먼지, 산불발생 주요 원인**입니다.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주의하실 사항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영농부산물(낙엽, 폐기물),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지 맙시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소각은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 **영광군 산불대책본부(350-5351),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119(소방서), 경찰서(112)**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낸 산불도 강력 처벌대상

○ **벌 칙**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타인 소유의 산림까지 확산되어 피해를 입힌 때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과실로 산불을 낸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 **과태료**

- **산림주변 소각할 경우** :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산림 인접지 외 논 · 밭에 불 놓다 소방차 출동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료제공 : 영광군청 산림공원과 ☎ 061-350-5352

산악·해안 조난신고는 국가지점번호를 이용하세요!

○ 국가지점번호란?

- 국가지점번호는 국토와 해양을 일정 간격(격자형)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로,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 활동의 위치 표시로 활용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 모바일 검색 방법

- 모바일에서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
- 국가지점번호 클릭
- 사용자의 위치로 이동, 국가지점번호판 레이어 활성화
-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확인

※ 예시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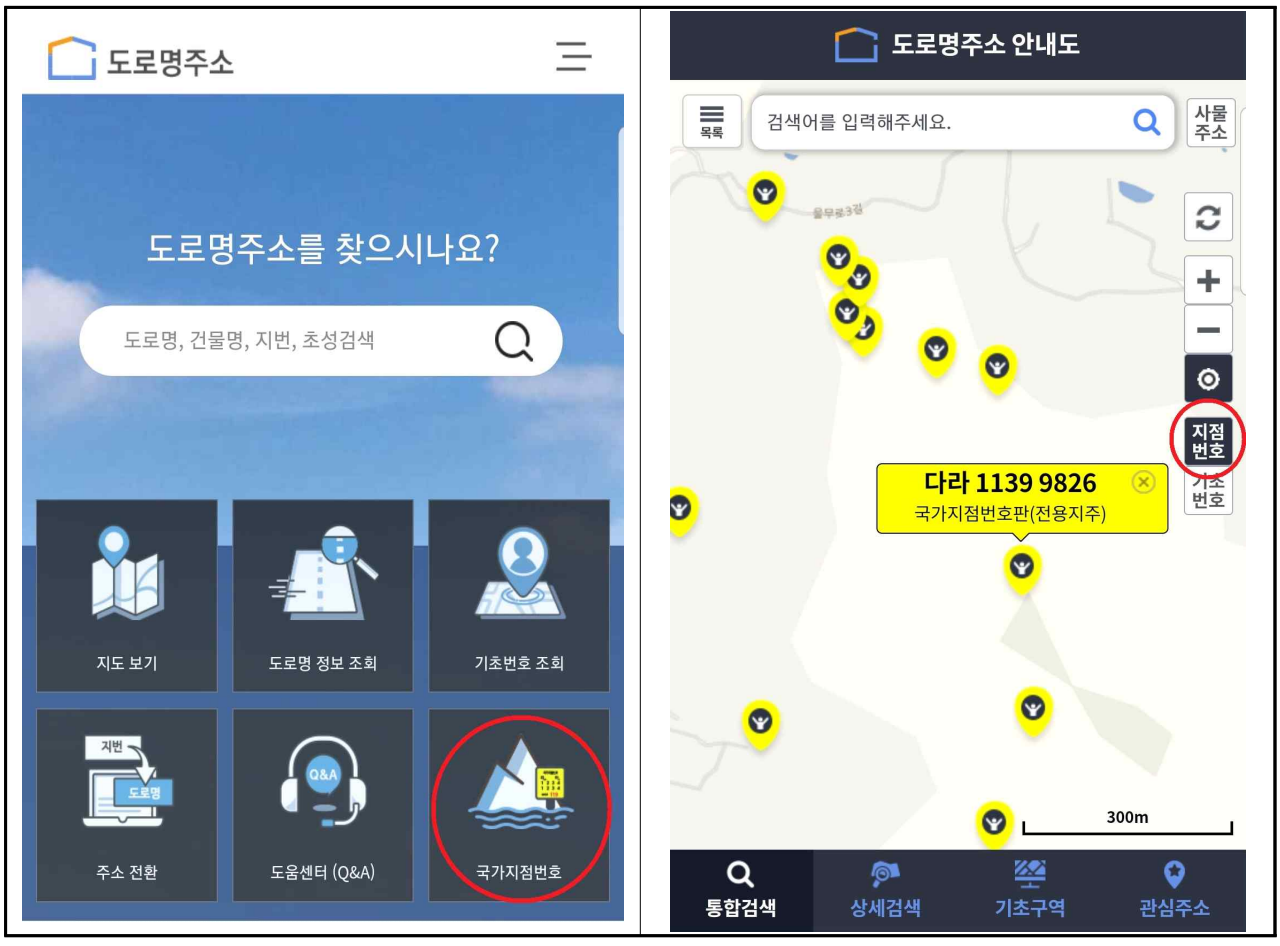

임야화재 인명피해 예방 안내

영광소방서 ☎061-350-0865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유의사항 안내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

2023. 3. 8.(수) 실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1 기부행위 금지·제한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누구든지**

➠ 기부행위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기부행위 제한기간 : 2022. 9. 21. ~ 2023. 3. 8.

○ **조합장**

➠ 재임중 일체의 기부행위

2 기타 금지·제한

○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조합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과태료의 부과·징수

○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

4 신고 포상금 지급

○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3억원** 지급

위반행위 신고 ☎ 061-351-2172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고향사랑 기부제

농림축산식품부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1.1.부터 시행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농업·농촌을 두 번 응원해 주세요! ♬

한 번은 농촌지역 기부로 ~
또 한 번은 농·축산물 답례품으로 응원해 주세요 ~

내용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와 지역주민 복리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기부하는 제도
시행일	**2023. 1. 1.부터** 시행
기부 주체	**개인** * 기부 제한 :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차명 또는 가명기부
기부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지방자치단체 기부금 합산)
기부금 사용 분야	**해당 지자체의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
세액 공제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10만원 초과부터는 16.5% 공제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기부받은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 * 관할구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관할구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 (조례로 규정), * 제외품목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참고	**최초 10만원 기부시엔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 10만원 전액 환급, 3만원 답례품 제공

농지은행 사업 안내 및 상담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 061-350-6531~6534

농지은행은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은퇴농, 자경곤란자,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임차·수탁 받아 전업육성대상자(청년창업농업인, 2030세대, 일반농업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매도·임대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입니다.

1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전업농육성대상자(6ha이하), 전업농업인(벼6ha/벼외2ha이상), 농업법인, 영농복귀자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 요건
순위결정	가.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나. 2030세대	■ 지원당시 연령이 만18세~만39세
	다. 후계농업경영인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만18세~만49세)
	라. 귀농인	■ 농촌으로 이주한지 5년 이내의 만18세~만55세 이하의 자 ■ 거주지 지자체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귀농인확인서를 공사에 제출
	마. 일반농업인	■ ① 40대농업인 ②50대농업인 ③ 60대농업인(만64세이하)

❑ 농지지원(농지은행통합포털(www.fbo.or.kr) 직접신청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생애주기별 맞춤형농지지원 ※ 단 임대수탁은 제한 없음

성장단계	영농경력/경영규모	지원내용
가. 진입	■ 2년이하 / 3ha이하	■ 매매 0.5ha(소유포함), 임대 2ha까지
나. 성장	■ 2년초과 / 3~6ha이하	■ 경영규모 6ha까지(매매·임대지원) 단 매매 소유포함2ha까지
다. 전업	■ 2년초과 / 6~10ha이하	■ 경영규모 10ha까지(매매는 소유포함 3ha까지)
라. 은퇴	■ 은퇴	■ 농지연금(만60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 지원내용

▷ **농지매도:** 논 및 밭 ㎡당 12,300원(**3.3㎡ 당 40,661원**)→초과금 자부담
청년창업농, 2030세대, 생애첫농지취득시(만55세이하)는 ㎡당 25,400원(**3.3㎡ 당 83,967원**)
지원(융자)조건 연리 1%, 연령별 상환기간 차등적용(최장 11~30년)

※ 2년 동안 논에 벼 외 타 작물 재배(경작농지연접 제외) 및 8년간 전매.임대.위탁 등 금지 조건

▷ **비축농지:** 영농경력 2년 이하인 자→2ha까지 / 2년 초과인 자→4ha까지
임대차기간: 5~10년 **타작물 재배 및 휴경(임대료 80% 감면)**,
표준임차료 50~100% 수준으로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임차농지:** 영농경력 2년 이하인 자→2ha까지 / 2년 초과인 자→6ha까지
임대차기간: 5~10년, 당사자간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농지교환분합:** 지원(융자)조건 연리1%, 10년 분할 납부

◆ **지원제외: 농지은행사업의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농업외소득 37백만원 이상자 당초 농지 소유자의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단, 상속필지 가능) 등**

❑ **농지공급(농지은행통합포털(www.fbo.or.kr) 직접신청**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은퇴(예정) 농업인의 농지를 감정평가(지역별 상환 차등적용) 가격,처분명령농지(개별공시지가외 실거래가격 중 낮은금액) 매입하여 임대**

★ 대상농지: 농업진흥지역, 전·답, 필지별 1,000㎡이상 **[맹지는 제외]**

▷ **농지매매: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자가소비 경작 3,000㎡이하) 등 당사자 간 협의 금액**

★ 대상농지: 농업진흥지역(전·답), 농업진흥밖(경지정리된 논, 밭기반정비사업 완료된 밭) 필지별 1,000㎡이상, 연접농지 합이 1,983㎡이상

▷ **농지장기임차: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 축소 농업인(농지법시행일 이전농지) 등**

★ 대상농지: 농어촌지역 사실상 논·밭 5~10년 임대 임차료는 당사자 간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자경 농지로부터 30km이내, 비농업인(상속, 8년자경 농지 1ha까지)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지원대상**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피해율이 50% 이상 또는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

★ 지원제외자: **76세 이상, 농업외소득 50% 이상인 자, 농업외소득 부부합산 37백만원 이상인 자 2주택소유자,상가, 골프·콘도회원권 등 소유자**

※ 매매대금으로 전액부채 상환(단 부채 50%이상 상환 후 잔여 부채 농림수산 연3%이하 대환 후 가능)

▷ 사업신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매입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사 등) **※ 소유권보존등기 된 시설**

▷ **매입농지 가격**

★ 매입가격: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시점(7~10년)의 감정가격(한도 10억원)**

▷ **농지매입 후 임대(매도자 본인 경작)**

★ 임대기간: 7년(10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임 대 료: (농지) 관행임차료 평균의 50%~100% 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수시납부: 납부일부터 환매시점까지 정책이자율 연 3% 적립 및 임대료 면제**

▷ **농지 등 환매**

★ 신 청: 매도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전부 및 부분환매]

★ 농지환매가격 결정: 전체환매는 감정평가액 또는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농지가격연상승율3%(정책이자율 연3%)× 환매소요 일수/365]산출금액 **중 낮은 금액, {임대기간 만료 전 부분환매시는 감정평가 금액}, 부분환매는 감정평가금액**

★ 시설가격: **당초 매입한 금액으로 환매** (소유권보존등기 된 시설)

★ 상환조건: 일시상환, 3년 분할상환(환매대금의 100분의 30이상 납부하고 잔여금액 3회 납부)

3 과원규모화사업

❑ 과원매매사업

▷ **매입농지**

★ 공사에서 매입할 수 있는 과원: 농어촌지역안의 실제이용현황이 과원인 농지(전,답,과수원)
※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 지목변경 후 가능

▷ **지원대상**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만 64세 이하,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 **영농경력 3년 이상** 및 경영규모가 0.3ha(시설 0.1ha)이상 (지원상한: 소유+지원=5ha)

▷ **지원조건**

★ 농어촌지역 안의 실제 과원인 농지 연리 2%, 연령별 상환기간 차등적용(최장 30~11년)

★ 지원상한: **20,000원(과수목 포함)/㎡**→초과금 자부담 ※ 평당(66,000원)

❑ 과원임대차사업

▷ **임대농지**

★ 공사에서 임차할 수 있는 과원: 농어촌지역안의 실제이용현황이 과원인 농지(전,답,과수원)

▷ **지원대상**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만 64세 이하,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 영농경력 3년 이상 및 경영규모가 0.3ha(시설 0.1ha)이상 (지원상한: 소유+지원=5ha)

▷ **과원임대**

★ 임대차기간: 5~10년

★ 임 차 료: 임차료 상한 범위내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2 농지임대수탁사업

❑ 사업신청: **농지은행통합포털(www.fbo.or.kr) 직접신청**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대상농지**

★ 수탁농지: **농지법 시행일(1996.1.1.)이후에 취득한 개인 소유농지**
농지법 시행일(1996.1.1.)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농지

★ 수탁농지는 공고(10일)를 통하여 임차인 선정 후 임대
(단 사용대, 친환경단지 내 인증자, 연접농지, 시설 설치된 농지, 수목식재 제외)

★ 제외농지: 농지법 시행일(1996.1.1.)이후에 취득한 법인 소유농지
농지규모화사업 업무지침 별표3 사업 제외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한 농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 농지**
법인소유농지,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 등

▷ **농지임대**

★ 임 대 기 간 : 5년~10년

★ 임차료결정: 현지조사를 통해 농지여건을 고려하여 그 지역 시세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 임차인선정: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

★ 임차료지급: 매년 약정임차료에서 수수료(5%)를 공제하고 지급

※ 농지 계속 소유,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8년이상 위탁시 10%절감, 일반과세 적용)

5 농지연금

▷ **신청대상**

★ 연　　령: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 (전체 영농기간 합산)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2년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2020년1월1일 이후취득농지)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지원조건**

★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

★ 농지가격: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90%)** 가격 중 선택하여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연금수령방식**

★ 종신정액형: 가입자 및 배우자 평생 지급(배우자는 60세 이상이고, 승계선택 한 경우에 한함)
(정액형, 전후후박형-계약 후 10년간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적게 받는 상품)

★ 기간정액형 (5년,10년,15년):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상품

★ 경영이양형 (5년,10년,15년): 연금지급기간이 종료된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
일반 기간형에 비해 월지급금을 약 20～30% 더 많이 지급

★ 수시인출형: 농지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

★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
지급방식별 월지급 연금(예시) 만74세, 공시지가 기준 산정된 금액입니다.

(단위:만원)

농지 가격	종신형			기 간 형					
				정액형			경영이양형		
	정액형	전후 후박형	수 시 인출형	5년(78세)	10년	15년	5년	10년	15년
5천만원	24	28/20	17 (14백만원)	82	43	31	89	48	34
1억원	48	56/39	34 (28백만원)	163	87	63	178	95	68
2억원	96	112/78	68 (57백만원)	300	173	125	300	191	136
3억원	144	168/118	102 (85백만원)	300	260	188	300	286	204

▷ **농지연금 장점**

★ 평생보장: 부부 모두 평생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담보농지를 직접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

★ **재산세 감면**: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초과 농지는 **6억까지만 감면**

★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건강보험료 변동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1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6.99% → 7.09%	부과점수당 205.3원 → 208.4원
가입자부담 평균 **월 2,069원** ↑	세대당 평균 **월 1,598원** ↑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의 이유로 2023년 건강보험료가 1.49% 인상됩니다.

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사후 정산 첫 실시(11월)

기존

폐업 증빙 등을 통한 보험료 조정

소득 정산 제도

보험료 조정 후,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정산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소득월액 보험료에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한 소득 정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2년 9~12월 조정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조정 후, 국세청 확정 소득(사업·근로소득)을 연계하여 보험료 사후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재난적의료비 재산 기준 완화 및 지원 대상·한도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대상·한도가 확대되는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재산 기준은 1월1일부터완화되고, 지원 대상·한도 확대는 상반기 중 개정 예정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부담 기준을 완화하여 한층 강화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개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만원 초과	현행 유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60만원 초과 (1인가구 기준 연소득 15%)	(1인가구) 연소득 10% 초과 ('23년 120만원) (2인가구이상) 160만원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소득 15% 초과	연소득 1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연소득 20% 초과	현행 유지

산정특례 제도 확대로 부담이 또! 줄어듭니다.

산정특례 대상 항목 확대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1월1일부터 총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확대

(희귀질환)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1개 질환
(극희귀질환) 거대결절성 부신 과다형성 등 20개 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등 21개 질환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 확대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 환자의 경우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투석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기존	개선
투석 실시 **당일** 모든 외래 진료와 해당 시술 관련 입원 진료에 한해 적용	**당일 투석 실시여부와상관없이** 투석혈관시술·수술관련 진료는 산정특례적용

건강검진 개선으로 국민이 더! 편해집니다.

구강검진 판정 기준 및 결과통보서 서식 개선

구강건강상태 표현 중 판정 기준이 애매한 표현을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하고, 구강건강상태를 건강신호등으로 이미지화하여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추후 치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골밀도 검사값을 표기하여 결과통보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기존) 정상A, 정상B, 주의, 치료 필요

(개선) 양호, 주의, 질환 의심, 치료 필요

(치아우식 위험도 3단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개선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관련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비 지원 대상자를 소득하위 70%에서 80%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손쉽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단 발달평가 안내문으로 보호자의 보건소 방문 없이 정밀검사 가능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사람 중 건보료 하위 80%까지 검사비 지원

장기요양보험은 이렇게 더! 좋아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및 수가 인상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인력 운영비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0.8577% → 0.9082%)과 수가(평균 4.70%↑)가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돌봐줄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 → 0.9082%

0.0505%p 인상

장기요양급여 비용

구분	평균	시설급여	재가급여
인상률	4.70%	4.55%	4.81%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

변경에 따라, 이제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총 급여 비용이 245만 2,500원이 되며,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은 이 금액의 20%인 49만 500원이 됩니다.(1등급 기준)

또한 주야간보호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2만 7,000원~21만 2,300원까지 증액됩니다. 이 외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횟수 확대, 가족요양비 인상 등 다양한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 ○ **(시설급여) 1등급 기준 일 최대 81,750원** (30일간 급여비용 최대 245만2,500원)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2만7,000원~21만2,300원)
- ○ **(중증수급자 방문요양급여) 8시간 연속 서비스 이용횟수 변경**(4회 → 6회)
- ○ **(가족요양비) 인상**(월 15만원 → 월 22만3,000원)

장기요양보험은 이렇게 더! 좋아집니다.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급하게 이용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공단에 치매가족휴가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도가 확대되어 연간 최대 9일*까지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간 8일(16회) 이내에서 연간 9일(18회)이내로 확대

단기보호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대상으로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치매환자를 돌봄 해드리는 서비스

종일 방문요양

1, 2등급을 대상으로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가는 서비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확대

장기요양 부양 스트레스가 높은 재가 수급자 가족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가족 상담 지원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운영센터가 올해 8월부터 227개로 확대될 예정이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기간 연장 안내

“세상을 밝히는 착한마음, 적십자회비”

적십자회비는 기부금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화재, 지진, 풍수해 등 재난 시 이재민 구호나 사업실패, 실직, 질병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 등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 모금기간 : 2023. 2. 13.~3. 31.

○ 참여대상 : 개인, 사업자, 법인 등 누구나

○ 납부방법 : 가상계좌(입금전용), 지로(금융기관), ARS 060-700-7730, 신용카드, 편의점 납부 등

○ 세제해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은 기부금으로 연간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됩니다.